민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지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809 발의연월일: 2024. 8. 13.

발 의 자:서지영·조은희·조승환

이헌승 · 성일종 · 곽규택

김선교 • 송언석 • 김용태

서천호 · 서일준 · 김승수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혈연관계에 기초한 상속제도를 원칙으로 하면서, 대습상속 제도, 상속 결격사유, 유류분 청구권 등을 규율하고 있는바,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과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,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법적 지위의 보장 등의 가치를 조화시키려는 취지임.

그런데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패륜, 범죄, 부양의무 해태 여부 등과 무관히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, 상속결격이 되었더라도 대습상속의 피대습인 지위를 부여하여 상속 결격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등이 대습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구체적 사안과 무관히 유류분 비율을 상실시키거나비율을 조정할 여지가 없고, 특별기여를 인정받아 증여받은 기여분도유류분 산정을 위한 상속재산에서 배제되지 아니하여 수증자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항할 수 없음.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

권 및 국민의 법감정 등과 관련하여 상기 규정들이 과연 합리적인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. 최근 헌법재판소 역시 유류분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한 「민법」 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아니한 제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.

이에 상속결격 된 자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을 적용하지 아니하고, 일 정 요건 하에서 상속권 상실선고 및 유류분 상실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권 상실의 사유를 용서하면 상속권 상실선 고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상속인의 법적 지위의 안정을 기하며,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여 특별기여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,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 하도록 상속제도를 개선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 및 기여상속인의 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대습상속의 요건을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로 한정하여, 상속결격 되거나 개정안에 따라 상속권 상실선고를 받은 경우는 피대습인이 될 수 없도록 함(안 제 1001조).
- 나. 상속 결격자 또는 상속권 상실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는 대습상 속에서의 대습인이 될 수 없도록 함(안 제1003조제2항).

- 다.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규정하고 그 사유가 되는 요건을 규정함 (안 제1004조의2 신설).
- 라. 상속권 상실선고의 청구가 확정되기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,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상속재산을 관리에 필요한 가정법원의 처분권을 규정함(안 제1004조의3 신설).
- 마. 피상속인의 용서가 있으면 같은 사유로 상속권 상실선고를 청구하지 못함을 규정함(안 제1004조의4 신설).
- 바.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심각하게 해태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,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의사 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은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유류분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15조의2 신설).
- 사. 유류분에 기여분 관련 조항을 준용함(안 제1118조).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01조[대습상속(代襲相續)] 제100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.

제100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001조의 경우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자의 배우자는 같은 조에 따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,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.

제5편제1장제2절에 제1004조의2부터 제100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04조의2(상속권 상실선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인이 될 자의 상속권 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.
 - 1. 상속인이 될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상속인 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

- 가. 제826조에 따른 부양의무
- 나. 제974조제1호에 따른 부양의무
- 2.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(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)
- 3.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장기간 유기하는 등 정신적·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
- ② 피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제1068 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 가 제1항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.
- ③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권 상실의 선 고를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 속권 상실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상속 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.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.
- 제1004조의3(상속재산의 관리) ① 제1004조의2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그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777조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

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의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.

- ②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.
- 제1004조의4(용서) ① 피상속인이 제100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속권 상실 사유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자를 용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지 못하다.
 - ② 제1항의 용서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하거나 제1068 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하여야 한다.

제10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1010조(대습상속분) ① 제1001조에 따라 사망한 자를 갈음하여 상속 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한 자의 상속분에 따른다.
 - ② 제1항의 경우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들의 상속분은 사망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따라 정한다.
 - ③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배우자의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.

제1112조제4호를 삭제한다.

제11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15조의2(유류분 상실선고) ① 피상속인은 제1112조제1호부터 제3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이하 "유류분권리자"라 한다)

-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류분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상실 을 청구하여야 한다.
- 1. 유류분권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
 - 가. 제826조에 따른 부양의무
 - 나. 제974조제1호에 따른 부양의무
- 2.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(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)
- 3.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장기간 유기하는 등 정신적·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
-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유류분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제1115조제1항의 유류분반환 청구를 받은 사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람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 에 그 사람의 유류분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가정법원은 유류분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,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,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

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.

제1118조의 제목 "(準用規定)"을 "(준용규정)"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"第1001條"를 "제1001조"로, "第1008條"를 "제1008조"로, "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"를 "제1008조의2,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"로, "準用한다"를 "준용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습상속에 관한 적용례) 제1001조, 제1003조제2항 및 제10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제100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상속 결격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제3조(상속권 상실선고에 관한 적용례) 제1004조의2, 제1004조의3 및 제100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제1004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제4조(유류분 상실선고에 관한 적용례) 제1115조의2 및 제1118조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제1115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 또는 제1118조에 의해 준 용되는 제1008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15), 16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5) 상속권 상실 선고
- 16) 유류분 상실 선고

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49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9) 「민법」 제1004조의3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처분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

第1001條(代襲相續)前條第1項第1 號와 第3號의 規定에 依하여 相續人이 될 直系卑屬 또는 兄 弟姉妹가 相續開始前에 死亡하 거나 缺格者가 된 境遇에 그 直系卑屬이 있는 때에는 그 直 系卑屬이 死亡하거나 缺格된 者의 順位에 갈음하여 相續人 이 된다.

(생 략)

② 第1001條의 境遇에 相續開 始前에 死亡 또는 缺格된 者의 配偶者는 同條의 規定에 依한 相續人과 同順位로 共同相續人 이 되고 그 相續人이 없는 때 에는 單獨相續人이 된다. <신 설>

제1001조[대습상속(代襲相續)] 제 100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에 따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에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직계비 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 이 사망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 여 상속인이 된다.

第1003條(配偶者의 相續順位) ① | 第1003條(配偶者의 相續順位) ① (혂행과 같음)

> ② 제1001조의 경우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자의 배우자는 같 은 조에 따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,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 속인이 된다.

제1004조의2(상속권 상실선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인 이 될 자의 상속권 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.

- 1. 상속인이 될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가. 제826조에 따른 부양의무나. 제974조제1호에 따른 부양의무양의무
- 2.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
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
 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(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)
- 3.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장기간 유기하는 등 정신적・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그 밖 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 우
- ② 피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표시한 경우에 는 유언집행자가 제1항의 상속 권 상실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하여야 한다.
- ③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피

<신 설>

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상속 개시 후에 상속권 상 실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상 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 력이 생긴다.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.

제1004조의3(상속재산의 관리) ①
제1004조의2제1항의 청구가 있
은 후 그 선고가 확정되기 전
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같은 조
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청구가
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777
조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이
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
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
선임하거나 그 밖의 상속재산
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
을 명할 수 있다.

②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

<신 _설>

第1010條(代襲相續分) ① 第1001 條의 規定에 依하여 死亡 또는 缺格된 者에 갈음하여 相續人 이 된 者의 相續分은 死亡 또 는 缺格된 者의 相續分에 依한 다.

② 前項의 境遇에 死亡 또는 缺格된 者의 直系卑屬이 數人 인 때에는 그 相續分은 死亡 또는 缺格된 者의 相續分의 限 度에서 第1009條의 規定에 依 하여 이를 定한다. 第1003條第2 項의 境遇에도 또한 같다.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.

제1004조의4(용서) ① 피상속인이 제100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 른 상속권 상실 사유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자를 용서한 경우 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선 고를 청구하지 못한다.

② 제1항의 용서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하거나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하여야 한다.

제1010조(대습상속분) ① 제1001 조에 따라 사망한 자를 갈음하 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한 자의 상속분에 따른다.

② 제1항의 경우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들의 상속분은 사망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따라 정한다.

- 第1112條(遺留分의 權利者와 遺 第1112條(遺留分의 權利者와 遺 留分) 相續人의 遺留分은 다음 各號에 依한다.
 - 1. ~ 3. (생 략)
 - 4. 被相續人의 兄弟姉妹는 그 〈삭 제〉 法定相續分의 3分의 1 <신 설>

- ③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 인이 된 배우자의 경우에도 제 2항과 같다.
- 留分) -----
 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제1115조의2(유류분 상실선고) ① 피상속인은 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(이하 "유류분권리자" 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 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류분 상실의 의사 를 표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유 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유 류분권리자의 유류분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.
 - 1. 유류분권리자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 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 대하게 위반한 경우 가. 제826조에 따른 부양의무

- <u>나. 제974조제1호에 따른 부</u> 양의무
- 2.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(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)
- 3.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장기간 유기하는 등 정신적 ·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
-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유류 분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제1115조제1항의 유류 분반환청구를 받은 사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반환의 무를 부담하게 된 사람은 유류 분 반환청구를 받은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유류분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가정법원은 유류분 상실을

第1118條<u>(準用規定)</u> 第1001條, 第 1008條, 第1010條의 規定은 遺 留分에 이를 準用한다.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,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,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.

第1118條(<u>준용규정</u>) 제1001조, 제 1008조, 제1008조의2, 제1010조 의 규정은 유류분에 --- <u>준용</u> 한다.